

Monthly Legal Update - 2022.11.

DR & AJU LLC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행정·노동

최신 판례

2022두19 수당금

(대법원 선고일자:2022.11.17.)

◆ 사안의 개요: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시간 외 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들은, ①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공동근무시간(교대점점)을 추가로 주장하고, ② 시간 외 근무수당을 구하는 청구기간을 2019년 말까지로 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음

◆ 쟁점:

- (1)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과 시간 외 근무수당 청구기간 확장이 부적절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및 환송 후 법원의 심판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 (2)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소제기 시에 중단되는지 여부

- 1심: 원고들 일부 승 (☞ 원고들 청구 대부분 승소), 환송 전 원심: 항소기간, 환송심(대법원): 파기 환송(일부 ☞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휴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중복 청구를 인정한 부분 파기), 환송 후 원심: 원고들 일부 승 (☞ 원고들이 환송 후 원심에서 확장한 청구 대부분 승소)

입법(안)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자위원 선출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고 동시에 회사 동료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후보할 수 있던 요건을 삭제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령/32983_20221108

◆ 관련판례

2008도828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

- 판시사항:

- [1]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 의무 위반죄의 주체(=사용자위원인 의장)
- [2] 노사협의회가 약 7개월 동안 개최되지 않은 사안에서, 노사협의회 의장이 아닌 소속 단체의 대표를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1]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2조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회의의 소집절차를 통한 노사협의회 개최의 주체는 노사협의회 의장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임. 형법범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 및 같은 법 제20조에서 사용자 하여금 노사관계와 관련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함. 한편,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경영계획 전반 등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에게 보고·설명무를 부과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 및 관여의 권한을 보장하면서 그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32조의 처벌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32조, 제12조 제1항이 노사협의회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의장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함
- [2] 노사협의회가 약 7개월 동안 개최되지 않은 사안에서, 노사협의회 의장이 아닌 소속 단체의 대표를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2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주요 이슈

[한국경제] '임금 높여라'...거리로 나서는 40개국 아마존 창고 노동자
[서울경제] 2분기 일자리 63만개 증가...80%가 중·노년층 일자리

공정거래

최신 판례

2021두33722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대법원 선고일자:2022.9.29.)

◆ 사안의 개요: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사단법인 한국간접평가사협회)에 대하여, 원고가 모 든 구성사업자들에게 문서탁상자문의 제공을 금지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서 '영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공포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 고가 피고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

◆ 쟁점: 원고의 행위(문서탁상자문 제공의 금지)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중 '영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3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는지

- 1심: 공정거래사건이므로 해당 없음, 원심: 원고 승소(원고의 행위가 '영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입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수탁 계약에서 납품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대금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위수탁 기업이 사전 합의한 표준계약서에는 납품 단가 연동 조건 및 방식을 적시해야 함.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R2R1Y1Q0F8Z1U4R5P0E0G8M4R6F9

◆ 관련판례

94누103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 판시사항:

-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원사업자의 서면교부시기 및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교부의무
- [2]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소정의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
- [3]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를 제재할 때 그 미지급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 판결요지:

- [1]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위탁에 있어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할 때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교 부하여야 하고, 또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함
- [2]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를 종료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시공완료 의 통지를 받고서도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 하였다면, 원사업자가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 증이 없는 이상,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 그 결과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 [3]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됨.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음

주요 이슈

[헤럴드경제] '전경련' '공정위 기업처벌 항목 80%는 개선 필요'
[헤럴드경제] 플랫폼 독과점 문제 중심으로 봐야... '힘' 받는 '尹정부'만 온플법

인프라테크

최신 판례

2022다242342 퇴거청구 (대법원 선고일자:2022.11.17.)

- ◆ 사안의 개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후 지장물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퇴거청구를 하였다가 2심에서 주위적으로 지장물 인도청구를 추가한 사안
- ◆ 쟁점: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른 지장물 인도의무를 부담하는지, 퇴거의무만 부담하는지

-1심: 퇴거청구 인용(인도청구는 없었음), 원상: 주위적 청구(인도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퇴거청구) 인용

입법(안)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전자 이용 장비마다 검사를 따로 하던 것을 건물 밖에서 건물 단위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g/70738>

◆ 관련판례

2008도10373 전파법위반

- 판사사항: 이미 무선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은 다른 수입업자가 있음을 이용하여 동일한 제품을 형식승인 없이 수입·판매한 행위는 전파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무선설비의 납품처 직원으로부터 형식등록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범법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원심은, 구 전파법 제84조 제2호는 제46조 제1항의 '형식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기기'라는 표현 대신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수입업자에게 위 형식등록의 의무를 지움과 아울러 이에 위반하여 수입한 수입업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구 전파법 제4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정보통신부령인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7조에서도 위 형식등록에 따른 인증표시에는 인증을 받은 기기의 명칭, 제조연월, 제조자(제조국가) 외에 인증을 받은 자의 상호와 식별부호도 표시하도록 하고, 같은 규칙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전파관리소장은 인증을 받은 정보통신기기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기기를 제출받거나 구입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전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선설비 등 대물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 또는 사용하는 대인적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의 근거규정인 구 전파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동일한 형식(모델)의 무선설비를 수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입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위 법령에서 정한 형식등록을 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라고 해석됨.

위 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거나 위와 같은 해석이 법문언의 정당한 해석을 벗어난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제조사인 미국 회사로부터 수입·판매한 이 사건 무선설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수입업자가 받은 형식인증표시가 부착되어 있어 피고인이 별도로 형식등록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의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함

주요 이슈

[중양일보] 또 전기차 보조금 축소...구매위축 우려 [헤럴드경제] "Si로 도로 위험 분석"...다리스프리트, 총 58억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조세

최신 판례

2022두47063 취득세 등 추징부과처분 등 취소 (대법원 선고일자:2022.11.17.)

-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산업단지 내 공장건물 신축용 토지를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비로소 공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음.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였음.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는 등 주장을 하며 취득세 추징처분의 위법을 다툼
- ◆ 쟁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이 정한 취득세 추징 배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의 존부

-1심: 원고 패소, 원상: 원고 승소

입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도록 함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F2R0L5H1J9K1F3T4Z8V1M0K6X52

◆ 관련판례

2017두413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판사사항:

[1] 구 국제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의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甲 주식회사가 부동산 양도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甲 회사의 일부를 인적분할 방식으로 설립한 회사에 이전하고 위 계약금과 중도금 관련 유동부채를 포함한 분할 전 甲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채 전부를 보유한 상태. 甲 회사의 주주들이 乙 주식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한 후 甲 회사를 乙 회사에 흡수 합병하였고, 乙 회사는 합병 당시 위 부동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고 위 부동산을 매수자에 이전하여 매매잔금을 받은 후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합병 당시 시가로 평가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 회사가 분할과 합병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 위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를 부당하게 회피하였다고 보아 乙 회사에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안. 이러한 분할과 합병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에 대하여 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판결요지:

[1] 구 국제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우,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 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2] 甲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를 줄이는 방안을 찾던 중 甲 회사와 사업 목적도 다른 乙 회사를 인수하여 분할과 합병으로 법인세를 대폭 줄인 것으로, 위 분할과 합병에 법인세 회피의 목적 외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위 부동산의 양도와 이러한 분할과 합병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항까지 더하면 구 국제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위 각 거래를 그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다고 봄. 이러한 분할과 합병은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하므로 乙 회사에 대하여 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주요 이슈

[중양일보] KD '소득세 부가세 세율 높여야...이대로 가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 145%' [중양일보] 기재위, 세계가편안 심사 무산...여야 팽팽한 힘겨루기

금융

최신 판례

2018두67 손실보상금
(대법원 선고일자: 2022.11.24.)

- ◆ 사안의 개요: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 단계에서 원고의 손실보상금채권에 대해 복수의 압류·추심명령이 내려졌으나, 피고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함. 상고심에서 피고는 처음으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함
- ◆ 쟁점: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

-원고: 일부 승, 증액되어야하는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명함

입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청약자측 이자율 산정 시 기준금리와 시중 예금금리를 고려하도록 했고, 기존 국토부 고시를 법률로 상향하도록 함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V2H0Q9G2L6L1S7V0J5Z1H5L7H6Y1

◆ 관련판례

2022도3044 주택법위반

- 판시사항:

[1]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공급질서의 교란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는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행위'의 의미

[2]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1]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행위'란 그 개념상 입주자저축 증서 등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귀속주체를 중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함

[2]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불이 타당함.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 제2호에서 양도·양수 등이 금지되는 증서의 하나로 '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를 정하고 있음. 여기서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고(주택법 제56조 제2항), '증서'는 그 사전적 의미가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임. 결국 '입주자저축 증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함.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 및 순위, 그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내지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 문서'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이로써 그 입주자저축 증서에 관한 법률상 혹은 사실상 귀속주체를 중국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함.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2호가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그 자축에 관한 증서를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정해진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게만 인정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

주요 이슈

[경향신문]금융당국,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리 경쟁 자제" 요청... 상품 금리 인상 계획 보유한 은행도 [헤럴드경제]한국 연금제도, 글로벌 연금제도 평가(MCGP)에서 등급 상향

기업승무

최신 판례

2021다205650 신주발행무효
(대법원 선고일자:2022.11.17.)

- ◆ 사안의 개요: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주식을 대량 취득한 직후, 피고회사는 전환사채발행과 1차 신주발행을 하였고, 원고들은 전환사채발행무효확인 및 1차 신주발행무효확인을 구하는 선행 소송을 제기하여, 선행소송에서 전환사채발행은 유효로, 1차 신주발행은 무효로 확정됨. 이후 전환사채 인수회사들이 전환권을 행사하여 전환권 행사에 따른 2차 신주발행이 진행되자, 원고들은 피고회사를 상대로 2차 신주발행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1) 전환사채발행 무효의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미치는지
- (2) 이 사건 2차 신주발행에 전환사채발행과 독립한 고유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1상: 소 각하(출소기간 도과 이후의 소제기라는 취지), 원심: 항소기각(소제기는 적법하나, 선행판결이 전환사채발행을 유효로 판단한 기판력에 따라 그에 기한 2차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다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이유로 항소기각)

입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 기업이 앱마켓 수수료를 정할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할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관계기관이 조정을 권고하도록 함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E2F1W0M0Z4E1H4J1F1T0K8J2B3T2

◆ 관련판례

2019도436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판시사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으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판결요지: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사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조 제1호).

한편 대부업법은 '대부업·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간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제1조).

대부업법의 관련 규정과 입법 목적,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인 의미,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들고 있는 어음할인과 양도담보의 성질과 효력 등에 비추어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으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요 이슈

[문화일보]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 올해 0.33%P 증가할 것 [헤럴드경제]메트남에 첫 한국형 산단...韓기업 진출 교두보 첫삼

담당 변호사 및 전문 인력

BD 총괄본부

행정·노무

공정거래

인프라테크

조세



차 동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김 광수
파트너변호사
T : 02-3016-7405
E : kskim2@draju.com



구 상오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349
E : smkoo@draju.com



이 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김 신희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57
E : shiny@draju.com

금융

기업승무



김 인진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61
E : kij@draju.com



김 수형
파트너변호사
T : 02-563-2900
E : shkim@draju.com